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 6. 18.(목)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5년 6월 1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6월 1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6월 10일

-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조운희)

1. 제안사유

○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실 설치 및 한시기구 연장 등 국단위 기구기능 조정 사항과

- 사업소 명칭변경 등 기능 재배치 사항을 반영하고,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구조정 : +1실 (1실 7국 2본부 → 2실 7국 2본부)

○ 신설 : 재난안전실(안 제5조, 제6조의2)

○ 명칭변경 : 안전행정국 → 행정국(안 제7조)

- 안전관련 총괄 기능을 재난안전실로 이관

○ 한시기구 연장 : 혁신도시관리본부 2016. 6.30.까지 1년간 기간 연장,

- 충청북도 조례3496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제2조)개정

< 局 편제 순서 >

기획관리실, 재난안전실, 행정국, 보건복지국, 경제통상국, 농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균형건설국, 바이오환경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방본부

□ 사업소 명칭 변경

○ 세종사무소 → 서울본부 (안 제56조의2)

□ 분장사무 조정

○ 이관 (안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2조)

- 지역정보화, 정보통신, 정보보호 업무 : 기획관리실 → 행정국

- 안전관리 총괄, 민방위, 경보통제업무 등 : 안전행정국 → 재난안전실

- 자연재난관리, 재해예방복구, 하천 업무 등 : 균형건설국 → 재난안전실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 금번 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실 설치 및 한시기구 연장 등 국 단위 기구와 기능을 조정하고, 사업소의 명칭변경과 기능재배치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 재난안전실을 신설하여 안전관련 총괄 기능을 재난안전실로 이관함에 따라 안전행정국의 명칭을 행정국으로 변경하고, 한시기구인 혁신도시관리본부를 201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세종 사무소를 서울본부로 명칭변경하며,
- 기획관리실의 지역정보화, 정보통신, 정보보호업무를 행정국으로, 안전행정국의 안전관리 총괄, 민방위, 경보통제업무 등을 재난안전실로, 균형건설국의 자연재난관리, 재해예방·복구, 하천업무 등을 재난안전실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 금번 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실의 신설에 따라 기구신설 및 명칭변경과 기능이관을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정보화 담당관이 행정국으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8
----------	-----

제출연월일 : 2015년 6월 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실 설치 및 한시기구 연장 등 국단위 기구·기능 조정 사항과
 - 사업소 명칭변경 등 기능 재배치 사항을 반영하고,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구 조정>

□ 실·국 조정 : +1실 (1실 7국 2본부 → 2실 7국 2본부)

- 신설 : 재난안전실 (안 제5조, 제6조의2)
- 명칭변경 : 안전행정국 → 행정국 (안 제7조)
 - 안전관련 총괄 기능, 재난안전실로 이관
- 한시기구 연장 : 혁신도시관리본부 1년간 기간 연장, 2016. 6.30.까지
 - 충청북도 조례3496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제2조)개정

<국 편제 순서>

기획관리실, 재난안전실, 행정국, 보건복지국, 경제통상국, 농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균형건설국, 바이오환경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방본부

□ 사업소 명칭변경

- 세종사무소 → 서울본부 (안 제56조의2)

<사무 조정>

- 이관 (안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2조)
 - 지역정보화, 정보통신, 정보보호 업무 : 기획관리실 → 행정국
 - 안전관리 총괄, 민방위, 경보통제업무 등 : 안전행정국 → 재난안전실
 - 자연재난관리, 재해예방복구, 하천 업무 등 : 균형건설국 → 재난안전실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단장·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단장·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안전행정국”을 “재난안전실, 행정국”으로 한다.

제6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 및 도민안전종합대책 수립 추진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수립·시행
4. 민방위, 비상대책, 경보통제에 관한 사항
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상시훈련 총괄 조정
6. 사회재난 대책의 수립, 조정, 대비, 대응, 수습 총괄
7. 안전사고예방 종합대책 수립·추진
8. 시기별, 유형별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9.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 및 운영
10. 재난 유형별 매뉴얼 관리 및 총괄조정
11.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자연재난 예방, 대응, 복구에 관한 사항

13. 자연재해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14.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
15. 하천행정에 대한 종합계획 조정
16. 하천재해 예방사업 및 하천공사에 관한 사항
17. 하천유역 종합치수계획,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7조의 제목 “(안전행정국)”을 “(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지역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14.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산업 진흥
15. 인터넷 서비스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제10조제6호 중 “수리”를 “수리(水利)”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잠업”을 “잠업(蠶業)”으로 한다.

제12조제11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2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제19호부터 제27호까지로 한다.

제13조의2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 제19조, 제23조 및 제27조 중 “통할”을 각각 “총괄”로 한다.

제28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0조, 제34조 및 제38조 중 “통할”을 각각 “총괄”로 한다.

제39조제6호 중 “조림”을 “조림(造林)”으로 한다.

제41조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42조제2호 중 “위해”를 “위해(危害)”로 한다.

제45조, 제48조 및 제51조 중 “통할”을 각각 “총괄”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담수어”를 “민물고기”로 한다.

제54조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55조제1호 및 제2호 중 “담수어”를 각각 “민물고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 담수어”를 “그 밖에 민물고기”로 한다.

제8절의 제목 “제8절 충청북도세종사무소”를 “제8절 충청북도서울본부”로 한다.

제56조의2제1항 중 “소속하에 충청북도세종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소속으로 충청북도서울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소”를 “본부”로, “세종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5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의3(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6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의4(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회·정당과 관련되는 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부예산 확보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3. 도정의 대외홍보 지원
4. 충청북도 출신 출향인사와의 업무협조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5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5(사무소) 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충청북도조례 제3496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5년 6월 30일”을 “2016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 균형건설국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총괄지원관란 및 통제관란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별표 7 중 “안전행정국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⑩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행정국장”으로 한다.

⑪ 충청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소 관 부 서	
	주관실국	부 서
일반행정 분 과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의회사무처, 공보관, 감사관, 미래전략기획단, 기획관리실, 행정국,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서울본부, 북부출장소, 남부출장소
복지여성 분 과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관, 여성발전센터
문화체육 분 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관광국, 청남대관리사업소
경제환경 분 과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경제통상국, 바이오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경제자유구역청
농 정 분 과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정국, 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농산사업소, 내수면연구소
안전건설 분 과	균형건설국 (균형발전과)	재난안전실,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방본부, 각급 소방서, 도로관리사업소

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⑮ 충청북도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⑯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실장·국장·<u>단장·본부장</u>·담당관·과장 등 보조 및 보좌기관의 직급)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장·<u>단장·본부장</u>·담당관·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출장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조(실장·국장·<u>본부장</u>·담당관·과장 등 보조 및 보좌기관의 직급) ----- ----- -----<u>본부장</u>----- ----- ----- -----.</p>
<p>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u>안전행정국</u>, 보건복지국, 경제통상국, 농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균형건설국, 바이오환경국, 혁신도시관리본부 및 소방본부를 둔다.</p>	<p>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 ----- ----- <u>재난안전실, 행정국</u> ----- ----- ----- ----- -----.</p>
<p>제6조(기획관리실) (생략) 1. ~ 11. (생략) 12. <u>지역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u> 13. <u>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산업 진흥</u> 14. <u>인터넷 서비스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u></p>	<p>제6조(기획관리실) (현행과 같음) 1. ~ 11.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p>
<p><u><신 설></u></p>	<p><u>제6조의2(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u></p>

현행	개정안
	<p><u>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u> <u>2. 안전관리계획 및 도민안전종합대책 수립 추진</u> <u>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수립·시행</u> <u>4. 민방위, 비상대책, 경보통제에 관한 사항</u> <u>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상시훈련 총괄 조정</u> <u>6. 사회재난 대책의 수립, 조정, 대비, 대응, 수습 총괄</u> <u>7. 안전사고예방 종합대책 수립·추진</u> <u>8. 시기별, 유형별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u> <u>9.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 및 운영</u> <u>10. 재난 유형별 매뉴얼 관리 및 총괄조정</u> <u>11.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12. 자연재난 예방, 대응, 복구에 관한 사항</u> <u>13. 자연재해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u> <u>14.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u>

현행	개정안
<p>제7조(안전행정국) 안전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0. (생략)</p> <p><u>11. 재난안전관리 총괄 및 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u></p> <p><u>12. 민방위, 국가기반보호, 비상 대책, 경보통제에 관한 사항</u></p> <p><u>13. 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지도,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u></p> <p><u>14. 예산의 집행·결산 등 회계 업무,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u></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15. 하천행정에 대한 종합계획 조정</u></p> <p><u>16. 하천재해 예방사업 및 하천 공사에 관한 사항</u></p> <p><u>17. 하천유역 종합치수계획,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p> <p>제7조(행정국) 행정국장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u><삭제></u></p> <p><u>11. (현행 제13호와 같음)</u></p> <p><u>12. (현행 제14호와 같음)</u></p> <p><u>13. 지역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u></p> <p><u>14.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산업 진흥</u></p> <p><u>15. 인터넷 서비스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u></p>

현행	개정안
<p>제10조(농정국) (생략)</p> <p>1. ~ 5. (생략)</p> <p>6. 농지의 보전·이용, 농지개량 및 <u>수리</u>에 관한 사항</p> <p>7. ~ 13. (생략)</p> <p>14. <u>잠업</u>, 특용작물, 채소, 과수 및 화훼에 관한 사항</p>	<p>제10조(농정국)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 <u>수리(水利)</u>-----</p> <p>7. ~ 13. (현행과 같음)</p> <p>14. <u>잠업(蠶業)</u>----- -----</p>
<p>제12조(균형건설국) (생략)</p> <p>1. ~ 9.(생략)</p> <p><u>11.</u> 기업도시 건설·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p> <p><u>12.</u>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p> <p><u>13.</u> 도로사업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p> <p><u>14.</u>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p> <p><u>15.</u> 지방도, 시군도, 교량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p> <p><u>16.</u>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 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p> <p><u>17.</u> 여객·화물 사업 및 자동차·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p> <p><u>18.</u>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지역연계 교통체계 효율화</p> <p><u>19.</u> 물류단지 지정·관리</p>	<p>제12조(균형건설국)(현행과 같음)</p> <p>1. ~ 9.(현행과 같음)</p> <p><u>10.</u> (현행 제11호와 같음)</p> <p><u>11.</u> (현행 제12호와 같음)</p> <p><u>12.</u> (현행 제13호와 같음)</p> <p><u>13.</u> (현행 제14호와 같음)</p> <p><u>14.</u> (현행 제15호와 같음)</p> <p><u>15.</u> (현행 제16호와 같음)</p> <p><u>16.</u> (현행 제17호와 같음)</p> <p><u>17.</u> (현행 제18호와 같음)</p> <p><u>18.</u> (현행 제19호와 같음)</p>

현 행	개 정 안
20. <u>하천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u>	<삭 제>
21. <u>자연재난관리,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u>	<삭 제>
22. <u>토지정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u>	19. (현행 제22호와 같음)
23. <u>공시지가 관리 및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사항</u>	20. (현행 제23호와 같음)
24. <u>토지정보의 조사·등록·관리·제공에 관한 사항</u>	21. (현행 제24호와 같음)
25. <u>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u>	22. (현행 제25호와 같음)
26. <u>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23. (현행 제26호와 같음)
27. 삭제	24. (현행 제27호와 같음)
28. 삭제	25. (현행 제28호와 같음)
29. 삭제	26. (현행 제29호와 같음)
30. 삭제	27. (현행 제30호와 같음)
제13조의2(혁신도시관리본부) (생략)	제13조의2(혁신도시관리본부) (현행과 같음)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기타</u> 혁신도시 건설 추진에 필요한 사항	6. <u>그 밖에</u> ----- -----
제16조(총장) 대학에 총장을 두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 하며 학생	제16조(총장) ----- ----- <u>총괄</u> ----- -----

현 행	개 정 안
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 -----
제19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u>통할</u> 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원장) ----- ----- ----- <u>총괄</u> ----- -----
제23조(원장) 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u>통할</u> 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원장) ----- ----- ----- <u>총괄</u> ----- -----
제27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u>통할</u> 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원장) ----- ----- ----- <u>총괄</u> ----- -----
제28조(소관사무) (생 략) 1. ~ 3. (생 략) 4. <u>기타</u> 보건환경연구원 및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험·검사·연구에 관한 사항	제28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u> ----- ----- -----
제30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u>통할</u> 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서장) ----- ----- ----- <u>총괄</u> ----- -----

현행	개정안
제34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4조(소장) ----- ----- ----- <u>총괄</u> ----- -----.
제38조(소장) 산림환경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8조(소장) ----- ----- ----- <u>총괄</u> ----- -----.
제39조(소관사무) (생략) 1. ~ 5. (생략) 6. 우량묘목의 생산과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u>조림</u> 및 보호 7. ~ 12. (생략)	제39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 ----- <u>조림(造林)</u> ----- 7. ~ 12. (현행과 같음)
제41조(소장) 축산위생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1조(소장) ----- ----- ----- <u>총괄</u> ----- -----.
제42조(소관사무) (생략) 1. (생략) 2. 축산물 <u>위해</u> 및 안정성 평가 관리 3. ~ 10. (생략)	제42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u>위해(危害)</u> ----- ----- 3. ~ 10. (현행과 같음)
제45조(소장) 농산사업소에 소장을	제45조(소장) -----

현 행	개 정 안
<p>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u>통할</u>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 ----- <u>총괄</u>----- -----.</p>
<p>제48조(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u>통할</u>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48조(소장) ----- ----- ----- <u>총괄</u>----- -----.</p>
<p>제51조(소장) 여성발전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u>통할</u>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51조(소장) ----- ----- ----- <u>총괄</u>----- -----.</p>
<p>제53조(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u>담수어</u>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와 내수면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이하 "내수면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제53조(설치) ① ----- --- <u>민물고기</u> -----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4조(소장) 내수면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u>통할</u>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54조(소장) ----- ----- ----- <u>총괄</u>----- -----.</p>
<p>제55조(소관사무) (생략)</p>	<p>제55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1. <u>답수어</u> 양식에 관한 시험 연 구 2. <u>답수어</u> 치어생산 보급 및 희 귀어종 양식 3. ~ 4. (생 략) 5. <u>기타 답수어</u> 양식에 필요한 사항	1. <u>민물고기</u> ----- ----- 2. <u>민물고기</u> ----- ----- 3. ~ 4. (생 략) 5. <u>그 밖에 민물고기</u> ----- -----
<p style="text-align: center;"><u>제8절 충청북도세종사무소</u></p> 제56조의2(설치) ① 법 제11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국회, 정당 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도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 하여 도지사 <u>소속하에 충청북도 세종사무소(이하 “사무소” 라 한다)를 설치한다.</u> ② <u>사무소는 세종시 관내 또는 도 본청에 둔다.</u>	<p style="text-align: center;"><u>제8절 충청북도서울본부</u></p> 제56조의2(설치) ① ----- ----- ----- ----- ----- <u>소속으로 충청북도서 울본부(이하 “본부” 라 한다)-</u> ----- ② <u>본부- 서울특별시</u> ----- -----
제56조의3(소장) 사무소에 소장을 <u>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 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 원을 지휘·감독한다.</u>	56조의3(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u>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u>
제56조의4(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u>사항을 관장한다.</u> 1. <u>삭제</u> 2. <u>중앙행정기관, 국회, 정당과</u>	제56조의4(소관사무) 본부장은 다 <u>음 사항을 관장한다.</u> 1. <u>국회·정당과 관련되는 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u>

현 행	개 정 안
<p><u>의 긴밀한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u></p> <p><u>3. 국가예산 확보 및 도정의 대외홍보 지원</u></p> <p><u>4. 그 밖에 도정과 관련된 사항</u></p> <p><u><신 설></u></p> <p>제58조(소장) 북부출장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충청북도조례 제3496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2조(한시기구) 통합추진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혁신도시관리본부의 존속기한은 <u>2015년 6월 30일</u>까지로 한다.</p>	<p><u>2. 정부예산 확보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u></p> <p><u>3. 도정의 대외홍보 지원</u></p> <p><u>4. 충청북도 출신 출향인사와의 업무협조</u></p> <p><u>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u></p> <p><u>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u></p> <p><u>제56조의5(사무소) 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58조(소장) ----- ----- ----- <u>총괄</u> ----- -----.</p> <p>충청북도조례 제3496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2조(한시기구) ----- ----- ----- ----- <u>2016년 6월 30일</u> ----- -----.</p>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별표1>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구분	실·국·본부
서울특별시			17개 이내
광역시	인구 350만 이상 400만 미만		15개 이내
	인구 300만 이상 350만 미만		14개 이내
	인구 250만 이상 300만 미만		13개 이내
	인구 200만 이상 250만 미만		12개 이내
	인구 200만 미만		11개 이내
세종특별자치시			7개 이내
도	경기도		21개 이내
	인구 300만 이상 400만 미만		12개 이내
	인구 200만 이상 300만 미만		11개 이내
	인구 100만 이상 200만 미만		10개 이내

<비고>

1. 실·국·본부의 수를 산정할 때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본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실·국·본부 수에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를 두어야 한다.
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지사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